

인천지방법원 2021. 4. 14 선고 2020가단2537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

피고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21. 3. 10.

판결 선고 2021. 4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B과 피고 사이에 2019. 9. 1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. 9. 11. 접수 제340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5. 8. 21.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2,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B은 2015. 9. 9. 위 은행으로부터 2,5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6. 4. 22.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2,12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B은 2016. 4. 27. 위 은행으로부터 2,5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
다. B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. 3. 13. C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14,260,0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라. 한편, B은 2019. 9. 11.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,4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

(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고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B 사이에는 이미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. 9. 11.로부터 불과 1개월만인 2019. 10. 19.경 B이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2020. 3. 13.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

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(2)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9,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만이 확인되는 반면, B에 대한 소극재산으로는 D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150,634,000원,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2,880만 원의 담보대출금채무, F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3,300만 원, G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15,501,000원, H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700만 원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4,879,195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.

(3)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), 갑 제11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B은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, B은 2017. 7. 4. 피고로부터 2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. 2. 13.까지 이를 변제한 바 있는 점, ② 이에 피고는 B으로부터 금원대여요청을 받고 2019. 9. 10. B에게 2,000만 원을 대여하는 약정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9. 9. 16. B의 계좌로 2,000만 원을 송금한 점,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통해서는 B의 소극재산 중 위 D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도 2억 1,480만 원(= 1억 8,600만 원 + 2,880만 원)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위 금액 또한 채권최고액일 뿐 실제 채무액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, ④ 위에서 인정한 B의 나머지 소극재산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이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.

나. 소결론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임진수

별지